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2196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21963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한희열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1. 12. 1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가소2046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97,298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와 같이 선행한다). 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만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제1심이 판결 이유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 삼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C은 허리통증(진단명 : 척추협착-경부 · 요추부)으로 인해 2018. 6. 19.부터 2018. 6.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레이저를 추가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ELD) 및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고 피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C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치료로 인한 보험금 16,297,2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예비적으로 양수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채권자가 원고인지 C인지 불분명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정리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C이 무자력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9. 11. 27.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로 정리하며, 원고가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2019. 10. 2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C의 채권양도 통지 및 통지 위임 사실통보서(갑 제1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약 1년 1개월이 지난 후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피고가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본안전항변을 하자, 양수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② 이 사건 치료 중 이른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레이저를 추가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ELD) 및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에 관한 진료비 부분이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최근 보험회사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맘모툼 절제술 등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갑자기 2019. 10. 21. C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대책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도 2019. 11. 21.자 준비서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③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또는 그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1)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청구는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를 하고 있어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